



## 산학협력위원회 운영규칙

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|
| 규정번호 | 5-0-19     |      |   |
| 제정일자 | 2013.06.24 |      |   |
| 개정일자 | 2014.03.01 |      |   |
| 개정번호 | Ver. 1     | 총페이지 | 2 |

**제1조(목적)**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는 동양미래대학교와 산업체간의 각종 상호협력 제반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  1. 대학 위원은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.
  2. 산업체 위원은 재직중인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1. 대학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2. 산업체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 계획수립 및 산학협력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 사업비 운영자문에 관한 사항
3. 산학간의 시설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4. 산업체 직원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

**제5조(직무)**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.

2.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3. 위원은 제4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2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보고 및 시행)** 1.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.

2.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**제8조(시행세칙)** 위원회운영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**제9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